

소 장

원 고 김 ○○외 115

피 고 고 양 시

손해배상(기)

소 가 : 58,000,000원

인지대 : 266,000원

송달료 : 45,200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귀 중

소 장

원 고 김 ○○외 115

(별지 기재와 같음)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 광 운

의정부시 가능 1동 363-1 (법전빌딩 304호)

피 고 고 양 시

대표자 시장 황 교 선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고양시의 일산구에 사는 시민들입니다.

각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피고시 산하 고양시 상수도사업소를 통해 수돗물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은 소비자들입니다.

2. 단수연장조치

가. 단수계획

피고시와 고양상수도사업소는 2000. 8. 24.경 도촌면 백석교 농수관로 이설공사를 이유로 식사, 고봉동을 제외한 일산구 지역 15개동 12만 6천가구에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7시까지 34시간 단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 단수계획연기

피고시는 그러나 8. 28. 오전 8시경 이 단수계획을 연기연기했습니다. 그 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 통지없는 단수조치

그러나 피고시와 상수도사업소는 이 연기계획을 불과 7시간 뒤인 8. 28. 오후 3시경 비가 그쳤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예정된 송수관로 이설공사를 통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때 원고들을 포함한 어느누구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단수계획연기조치가 취소된 사실을 알수도 없었습니다.

피고시의 일방적인 단수조치로 말미암아 원고들 및 일산구 시민들은 8. 28.부터 8. 30. 또는 8. 31.까지 (일부지역에 따라 단수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수에 따른 준비도 하지 못한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3. 원고들의 피해

원고들은 모두 물부족현상을 단수조치 첫날부터 겪어야 했습니다.

애초 예정된 단수조치가 연기된다고 해서 이미 받아놓았던 물을 써버린 탓에 정작 위 계획이 취소될 즈음에는 물이동이 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생활상의 피해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

제대로 밥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평균 2-3회씩 백화점, 직장의 구내식당등 불필요한 회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회의 식비가 대략 2, 3만원의 비용지출이 생긴 셈입니다.

2) 세탁

아이들이 있는 가정, 노부모가 있는 가정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세탁해야 할 빨래의 양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원고들 각 가정은 더러운 세탁물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3) 목욕

원고들은 평균 1일 1차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수기간동안 단 1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나 병약한 노인들을 부양하는 원고들중 일부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 대부분은 평균 1차례씩 근처 목욕탕이나 직장근처 목욕탕에 가야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원고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4) 기타

김치배추를 절여 놓았다가 예기치 않은 피고시의 단수조치로 배추를 버려야 했습니다.(원고 김○○)

학교(대진고등학교)가 급식을 하지 않고 물탱크가 바닥이나 아이가 30일에는 1교시 뒤, 31일에는 2교시 뒤 귀가해야 했습니다.(원고 임○○)

딸의 태열이 심한데 3일간 목욕을 못해 태열이 더욱 심해지는 피해도 입었습니다.(원고 오○○)

병든 시어머니의 목욕이 어려워 갇은 애를 써야 했습니다.(원고 박○○)

4. 피고의 책임

원고들이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는 다음 몇 가지입니다.

첫째, 예고없는 단수연기계획취소가 그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무기 연기된 단수계획이니 취소되고 원고들에게 대비할 겨를도 주지 않고 단수조치를 강행한 대목입니다.

적어도 통상의 단수조치가 취소한 수일전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둘째, 3, 4일간 계속하여 단수조치가 불가피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경위로 기왕의 단수조치가 연장되고 길게 되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전, 사후에 원고들 시민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공익상 단수조치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의 본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보면 피고시의 이 사건 단수조치는 지극히 오만하고 시민을 무

시하고 배려가 없었던 난맥행정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사후조치의 적정성입니다.

최대한 단수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경로를 통해 단수조치가 해제됐다고 고지하거나 통지한 일이 없습니다.

단수기간내내 원고들은 예측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악몽속에 살았습니다.

최소한 서면등을 통해 예정된 단수조치의 종결시점을 알려주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원고들이 기간내 고양시나 상수도사업소등에 문의 전화등을 하려했지만 이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아예 전화기를 내려 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터잡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추후 보완해서 신청합니다.

원고들의 손해내용이 각양각색인 탓에 정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시의 사려없는 단수조치로 생활의 고통을 당한 것은 물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원고들이 입은 생활피해의 정도, 단수기간, 단수결정변경의 과정, 사후 조치 미흡한 경위 등을 통합하여 보면 피고시는 위자료로 각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6. 결 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같

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 호 증 신문기사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분
1. 소송 위임장 각 1통

2000. 9. 1.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손 광 훈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귀 중

답 변 서

사 건 2000가합7582호, 손해배상(기)
원 고 김 ○○ 외 115
피 고 고 양 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여부

가. 피고시는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인 일산구 풍동, 식사동, 산황동 일대의 완벽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백석교 확장공사 및 그에 따른 송수관로 이설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 단수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2000. 8. 28. 09:00부터 같은 달 29. 19:00까지 34시간동안 단수하기로 하는 계획을 사

전에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단수예정일이었던 2000. 8. 28. 오전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위 송구관로 이설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위 단수계획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수계획을 연기하게 되자 단수가 되리라 믿고 휴업을 결정하였던 공장, 상가, 목욕업소, 음식점 등에서 근일내 또 단수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항의 민원이 빗발치게 되었고 오후가 되면서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피고시에서는 예정대로 다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단수조치도 예정대로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0. 8. 28. 16:00부터 같은달 30. 02:30까지 34시간 30분동안 단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 원고들은 최초 예정되었던 단수조치가 연기되었다가 다시 강행된 것을 어느 누구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시에서는 단수조치 전인 8. 28. 14:00부터 16:00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유선방송, 동사무소 전화등을 통하여 단수가 최초 예정대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당수 시민들은 단수가 최초 예정대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라. 결국 이 사건 단수조치는 위 공사의 시행이 시급한 시점에서 여러 부류의 시민들의 입장을 전부 고려하여야 하는 피고시로서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으므로 그로인한 원고들의 다소의 불편이 피고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가사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이 위자료로 금 50만원씩을 구하는

것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피고시가 주민홍보, 비상급수, 사과문전달등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아 많은 단수가 구중 일부인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습니다.

가. 원고들은 예정된 단수조치가 연기된다는 말을 믿고 단수에 대비하여 비축하여 두었던 물을 모두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4시간을 버텨야 하는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예고된 단수조치가 연기된 시점과 다시 단수가 된 시점과의 시간차가 불과 7시간에 불과한데 그 시간 동안 34시간의 단수에 대비하여 비축하여 두었던 물을 일부러 모두 써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피고시에서는 8. 28. 16:00부터 9. 1. 02:30까지 자체 급수지원 및 소방서, 타시군, 군부대등과 협조하여 비상급수지원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급수차 및 소방차 1일 38대, 물탱크 70개소, 물통 1,000여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약자, 임산부, 지체부자유자등이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공무원 1,200여명을 동원하여 방문 비상급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또한 원고들은 피고시가 위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단수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전화 문의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시로서는 집중호우 속에서도 장차의 더 큰 피해를 막고자 공사를 시행하여 최대한 신속한 공사를 위해 야간 및 우중에서도 쉬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단수로 인한 시민들의 전화문의에도 성실히 답변하였으나 전화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1회 통화시간이 2-30분 정도 걸려 모든 전화에 제대로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000. 9. 3.에는 2만 5천여 가정에 시장 명의의 사과문을 직접 방문, 가구주에게 전달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위로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3. 결론

2000. 10. .

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1부

귀 중